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0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구자근 • 박덕흠 • 박준태

김소희 · 김선교 · 인요한

권영세 • 고동진 • 박성민

김도읍 의원(10인)

찬 성 자:조지연 의원(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와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공개 등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부품 국산화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독립을 통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을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개발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각각 "부품개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각각 "부품개발"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부품개발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을 "부품개발사업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를 "부품가발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가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산화개발된"을 "개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를 "부품개발가업자의"로 한다.

1의2.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

제18조의 제목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을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를 "방위산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방위사업청장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제1항"을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제6항"으로, "출연할"을 "출연하거나 보조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분원(分院)에 관한 사항
 - 5.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 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
-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3.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
- 4. 방위산업 부품개발
- 5. 방위산업 부품개발 대상품목 조사 · 분석 및 공개
- 6. 방위산업 부품개발 관련 정책ㆍ제도 연구
- 7.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 8.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 및 지원
- 9. 방위산업 부품 표준 개발 및 보급
- 10. 국방중소 · 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1.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 분석
- 12.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3.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 14.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 15.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⑧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⑨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 ①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①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있다.
- 제26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진흥 원의 장"으로 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위사업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위산업 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고,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⑧ 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한다.
-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방기술 품질원의 정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국방

기술진흥연구소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의 기능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이 승계한다.

- ②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③ 진흥원 설립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방위산업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이하 "방위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진흥

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호 및 제4호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각각 "방위산업진흥원·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전문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			
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부품 국산화개발</u> 대상품목에	4. <u>부품개발</u>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		
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①	<u>품개발 촉진 등</u>) ① (현행과 같		
(생 략)	<u>♦</u>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	②		
라 발굴된 부품의 개발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부품 국산화개</u>	<u>부품개발</u>		
<u>발</u> 사업자로 선정하여 <u>부품 국</u>	<u>부품개발</u>		
<u>산화개발</u>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u>진흥원</u>		

- 2. ~ 5. (생략)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 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u> 선정하는 경우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 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요청 할 때에는 요청한 자의 부담으 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 ⑥ 방위사업청장·각군 참모총 장·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

2. ~ 5. (현행과 같음)
③
<u>부품개발</u>
부품개발사
업자
<u>부품개발</u>
4
<u>부품개발사업자를</u>
(5)
부품개발사업자가
· 1. (현행과 같음)
1. (包 5 4 ~ E 1) 2. 부품개발
□· <u> ㅁ /미 년</u>
(6)

업체등은 제2항에 따라 <u>국산화</u> <u>개발된</u> 부품에 대하여 무기체 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⑦ <u>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u> 선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u> <u>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u> 수 있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 사·연구
-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 <u>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u> <u>조사·분석 및 공개</u>
-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 <삭 제>

개발된
⑦ <u>부품개발사업자의</u>
제18조(<u>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u>
<u>등</u>) ①
<u>방위산업진흥원(이하</u>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u>다</u>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u> <u>지원</u>

-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 목에 대한 조사·분석
-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 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

 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

 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u>2. 명칭</u>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분원(分院)에 관한 사항
- 5.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 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 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 사·연구
-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3.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획 및 사업 관리
- 4. 방위산업 부품개발
- 5. 방위산업 부품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 6. 방위산업 부품개발 관련 정 책·제도 연구
- 7.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술지원및 사업관리

- 8.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 <u>행 및 지원</u>
- 9. 방위산업 부품 표준 개발 및 보급
- 10.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1.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 목에 대한 조사·분석
- 12.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 13.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 14.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

 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 15.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 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u>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u> 과 제6항-----
 - -----출연하거나 보조할-.
- ⑧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

 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

 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 ② -----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⑨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외의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다.
- ⑩ 진흥원의 운영 및 감독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①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8조의2(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국 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 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 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 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혂행과 같음)

른 권한의 일부를 <u>국방기술품</u> 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 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u><신 설></u>

국방기술품
질원의 장, 진흥원의 장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연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이를 공무원으로 본다.